

1. 개정이유

어린이의 공원 이용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CCTV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지표 중 더 이상 작성·관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녹지자연도를 식생보전 등급으로 대체하며, 어린이 공원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녹지자연도 기준을 식생보전등급으로 대체(안 3-2-1.(7)(가))
- 나.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CCTV 설치근거 마련(안 3-4-2.(12))
- 다. 어린이공원 내 설치시설 기준 정비(안 4-1-2.(2)(아)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공원·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도시공원·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제2절 3-2-1.(7)(가) 중 “녹지자연도 8등급”을 “식생보전등급 II등급”으로, “녹지자연도 7등급”을 “식생보전등급 III등급 지역”으로 한다.

제3장 제4절 3-4-2.(12) 중 “입구”를 “입구 및 어린이 놀이시설(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.)”로 한다.

제4장 제1절 4-1-2.(2)(아) 중 “운동시설”을 “운동시설, 교양시설 중 도서관(높이 1층,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)”으로, “화장실·음수장·공중전화실이며,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”를 “화장실·음수장·공중전화실로 하며,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·관리	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·관리
제2절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기준	제2절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기준
3-2-1.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일반 적인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 다.	3-2-1. ----- ----- ---
(1) ~ (6) (생략)	(1) ~ (6) (현행과 같음)
(7) 도시공원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수질, 토양, 동 · 식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, 공원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저감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.	(7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(가)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<u>녹지자연도 8등급</u> 이 상 지역, <u>녹지자연도 7등급</u>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 되는 지역, 생태계보전지 역,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, 습지보호구역 등은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	(가) ----- ----- <u>식생보전등급 II등급</u> -----, <u>식생보전등급 III</u> <u>등급 지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(나) (생략)	(나) (현행과 같음)

(8) ~ (10) (생략)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·조성·유지관리 기준 3-4-2.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·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(1) ~ (11) (생략) (12)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,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. (13) (생략)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-1-2. 어린이공원 (1) (생략) (2) 설치 및 관리기준 등 (가) ~ (사) (생략) (아)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, 휴양시설(경로당 및	(8) ~ (10) (현행과 같음)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·조성·유지관리 기준 3-4-2. ----- ----- ----- --- (1) ~ (11) (현행과 같음) (12) ----- ----- <u>입구 및 어린이 놀이시설(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.)</u> ----- -----. (13) (현행과 같음)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-1-2. 어린이공원 (1) (현행과 같음) (2) ----- (가) ~ (사) (현행과 같음) (아) ----- ----- -----
---	---

노인복지관을 제외), 유희 시설, <u>운동시설</u>, <u>편익시설</u> 중 <u>화장실 · 음수장 · 공중전화실</u>이며, <u>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 시설에 한한다.</u> (자) ~ (하) (생략)	----- ----- <u>운동시설, 교양시설</u> 중 <u>도서관(높이 1층, 면적 33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)</u>-----<u>화장실 · 음수장 · 공중전화실로 하며,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(자) ~ (하) (현행과 같음)
--	---